물류기기 공동 이용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4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백							15,260			
사업목적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 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대상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 (총 예산의 20%)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	융자	-	자부딩	<u>달</u> 6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투입 계획	합 계 국 고		,450	36,450		36,450 14,580		38,150 15,260			
711-4	<u>- ^ -</u> 자부딛		,580 ,870	14,580 21,870		21,870		22,890			
	21,070 21,070 22,090							·			
담당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ŀ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사무관 김아림 차 장 이찬우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1월)		사업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신 식품유통공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서										

I 주요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항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나.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3. 지위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소요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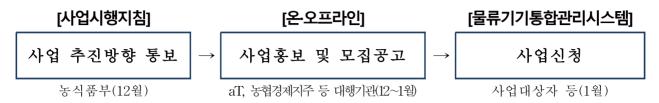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 (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 할 수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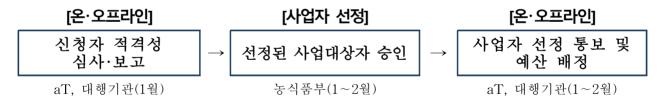
Ⅱ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2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언론사(농업전문지 등), 물류기기 통합관리전산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 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
 -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농협경제지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접수 및 취합하여 aT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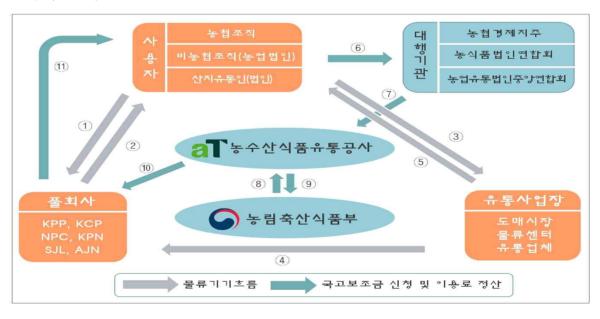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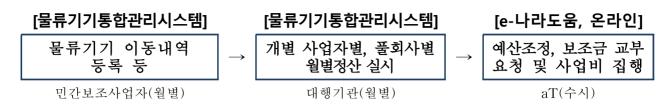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aT는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 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대행기관에 통보
- 대행기관은 선정된 사업자 대상 결과통보 및 사업관련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사업내용, 시행절차,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상세히 안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통 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 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4.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



가.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또는 반기별 가능)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 사업비 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대행기관은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농협 조직은 매월 해당분의 보조금을 농협경제지주에 신청하고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 보조금을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사전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 보관
 - * 대행기관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내역과 월별이용내역을 물류 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 및 점검

나. 이행점검

- 농식품부 및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대행기관 합동) 실시
 - * 현장점검 시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여부(표준규격품 생산자 표시 등) 등 지도·점검
- 현장 점검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등 사례 발견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aT는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업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등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 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5. 정산 및 사후관리

[은나라도움]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aT(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농식품부

- aT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등록
-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T는 사업정산 결과, 이용 실적(품목, 사용주체, 출하처, 대행기관별 이용현황), 집행 실적 등을 포함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유통사업장별 하역기계화율 조사 및 결과보고

2. 환류

○ 당해연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원)

							(= 1, = 2			
유형 ① 공영도대	매시장 출천	하시 (1회전	선기간 17억	일, 산지이	용 9일이	내)				
7 14		풀이	용료	N. A.CD	국고보조	자부담				
구분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VAT	(60%)	(VAT포함)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	용료	VAT	국고보조	자부담				
T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VAI	(40%)	(VAT포함)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	용료	VAT	국고보조	자부담				
一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VAI	(40%)	(VAT포함)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